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75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756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소127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정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소127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2019타해10497호"를 "2019타채10497호"로 고치고, 제3면 제22행부터 제4면 제5행을 아래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④ 피고는 2012. 9. 25. C과 사이에 1,2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6.으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관에는, 피고가 고객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8조 제1항), 고객이 서면으로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되 상계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상계 내지 대리환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계처리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493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계통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고객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고객이 명칭·상호 대표자·주소 등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통지 또는 서류가 고객에게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내용증명에 의한 상계통지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의한 상계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에 의한 상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송금 전에 이미 C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C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송달받아 C에 대한 예금채무의 임의지급이 금지된 상황이었는바(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명령의 송달 당시 C의 예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던 C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능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 여부나 그 효력 여하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의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다(즉 피고가 상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선행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상계처리로 인해 이 사건 압류명령의 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의 상계처리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임의지급 받을 수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의 상계처리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존 상계처리가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다시 적법한 상계처리를 할 수 있고, 피고는 상계권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전보경

판사김희수